◎ 국가데이터처 고시 제 2026 - 330호

통계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를 고시합니다.

2026 년 06 월 11일
국 가 데 이 터 처 장

1. 통계의 명칭 : 사업체노동력조사
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고용노동부
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118002호 [1968.04.18.]
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6.07.01.
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 사유
조사항목 (조사표)	ㅇ 부가조사(임금체계,정년제)(49)	ㅇ 부가조사(임금체계,정년제)**(50)**	- ‘야간노동 규율’ 방안 마련 위해 문항 추가, 응답자 부담 경감을 위해 문항 삭제
통계표 (결과표)	ㅇ 조사항목(조사표) 변경에 따른 통계표(결과표) 변경		